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7일, 윤종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윤종오)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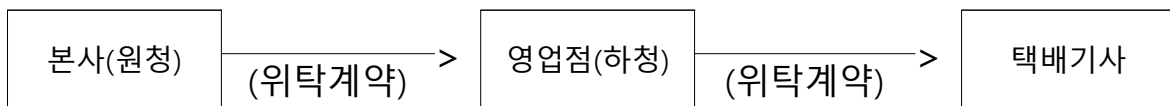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택배서비스사업의 거래구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보다 영업점에 위탁하여 영업점과 택배기사 간 운송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임.

【택배기사의 운송업무계약 현황('18 교통연, 택배서비스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종사자는 영업소와 계약하는 경우가 83.0%,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17.0%로 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 간, 영업점-택배종사사 간 계약이 주로 체결됨.

【택배서비스종사 위수탁계약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그런데 이와 같은 위탁계약 외에 영업점이 다른 영업점에게, 또는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위탁받은 영업점에서 종사자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배송 지시를 하는 등 택배업무의 재위탁으로 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¹⁾된 바 있음.

또한, 재위탁으로 인하여 다단계 구조가 형성되면 최초로 위탁받은 영업점 또는 종사자는 계약금액에서 일부를 제하고 다른 영업점, 종사자에게 재위탁하게 되어 자칫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는 저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물류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택배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되,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탁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다단계 구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4.10.22.) 회의록 p.53-54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재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배송인력의 공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8조의2제2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법 제12조²⁾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 제4조제1항³⁾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⁴⁾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의 운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⁵⁾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즉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안 제8조의2제2항 단서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로 하여금 재위탁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